

저작권 제도와 등록요건

김 시 호 교수

E-Mail: jurist4024@gmail.com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Con tents.

- 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개념
- 기 저작권 사례 분석
- 3 저작권 침해
- 4 저작권 등록 절차

- 9. 단체명 저작자
 - (3) 단체명의 저작물(업무상 저작물)
 - 1)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
 - 2)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 3) 공표시 법인 등이 발행자로 명시되어 있을 뿐 작성자가 별도로 명시되었다면 이른바 기명저작물로서 저작자는 그 작성자가 됨

10. 저작권자

(1) 개요

저작권자란 저작권의 귀속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나, 저작재산권의 경우 양도가 가능함

(2)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인격권의 특성상 일신에 전속하므로 저작자만이 저작인격권의 주체가 됨

(3) 저작재산권

1차적으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자가 되나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한 재산권이므로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상속을 받은 자도 저작권재산권자가 될 수 있음



(4) 저작자의 보호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함. 따라서, 당해 계약이 저작물의 단순한 이용허락 계약인지,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인지 불분명 하다면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함

(5) 현상공모

현상공모의 경우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을 실제로 작성한 응모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가지게 되나, 저작재산권의 귀속 관계는 현상모집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11. 저작권의 발생

(1) 무방식 주의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며,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여 저작자에게 귀속됨 - 베른협약

- (2) 저작권 등록의 효과
 - 1) 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에 신청하여 등록
 -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됨
 - 3)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 등록된 연원일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됨
 - 4) 등록되어 있는 저작물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12. 저작권의 보호기간

- (1) 저작인격권
 - 1)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함
 - 2) 단, 저작자 사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나,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형 등이 허용됨.



(1) 저작재산권

- 1)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
- 2) 단체명의저작물(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
- cf) 업무상 저작물이 50년간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창작 때로부터 70년 존속
-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 ex) "A"라는 저작물의 저작자인 甲이 2005년 1월 3일자로 사망한 경우 "A"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2006년 1월 1일부터 70년간인 207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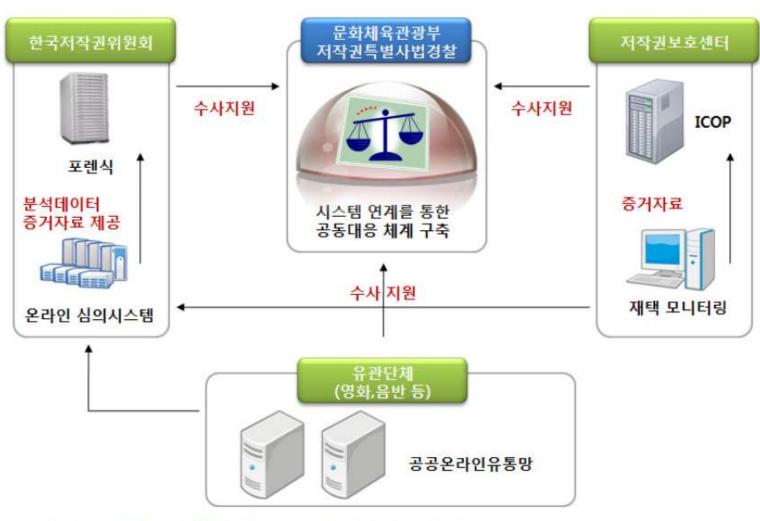


13. 저작재산권의 제한

- (1)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과서에 게재하거나 대학 등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도서 등에 게재하는 경우
- (2)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 신문 등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인용하는 경우

- (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5)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원소유자가 전시하거나,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은 복제가 가능함. 단,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여서는 안됨

<그림 1-2>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흐름도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 저작권 정책 업무 보고



Chapter.

저작권의 사례 분석

1. 현상공모 관련

(1) 사안

甲은 乙 회사의 상품 광고에 사용될 광고포스터 모집에 응모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 乙 회사는 甲의 광고포스터를 색채만 달리하여 상품광고에 사용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 1. 현상공모 관련
 - (2) 해결
 - 1) 광고포스터는 저작권법상의 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
 - 2) 한편, 현상응모만을 하였다 하여도 구체적 계약 등이 없는 경우 현상응모의 문구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다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광고포스터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 및 저작재산권 중 복제, 배포권 등이 침해가 성립됨.
 - 3) 다만, 乙이 스스로 창작하지 않았음을 甲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乙이 甲의 저작물을 현상공모하였으므로 충분한 접근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의거성이 추정됨

2. 동일성유지권을 손상시킨 경우

(1) 사안

미술작품을 화랑에 양도하면서 그 복제에 대한 권한까지 양도하였다. 이러한 계약을 근거로 화랑 측이 미술품을 복제하였으나, 저작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복제물이 원작의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저작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구제가 가능한가?



2. 동일성유지권을 손상시킨 경우

(2) 해결

- 1)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복제, 배포 등의 재산적 이용에 대한 권리 이외에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있다.
- 2)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거나 복제권을 이전 받아 복제물을 제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복제물이 원작의 이미지를 손상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저작자는 재산적 이용에 대한 허락 또는 재산권의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을 근거로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Chapter.

저작권의 침해

★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피에 올리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지요.

★ 공유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내 것을 나누는 때에만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해요.

★ 명화·음악 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직접 만든 영화, 직접 만든 음악이라면 모듈까,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하는 이러한 행동이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랍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 주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흔히 이런 행동을 하지요?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니 말이야 하겠습니다.

★ 멋진 음악, 내 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미니홈피나 블로그 회사에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여러분이 가진 음악 파일을 변환해서 배경 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의 멋진 장면, 쇼 프로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라는 친구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비록 한 장면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원래 드라마나 쇼 프로의 일부로서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는답니다.

★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나 가수 홈페이지에 그 가수의 노래를 올리려면 그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가수가 직접 작사 · 작곡한 곡이 아니라면 가수는 노래를 부른 데 대한 저작인접권만 있을 뿐이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곡의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음반제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 글짓기, 그리기 대회에 다른 사람 글. 그림 베껴서 내기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그림을 표절해서, 또는 친구의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대회 작품으로 내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래 작품 주인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스스로 낸 양심의 상처는 오래오래 아물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 학교 과제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양 제출하기

물론 숙제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료를 조사해 오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야만 하는 숙제를 다른 사람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가 한 것인 양 제출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양심 없는 행동이겠지요?

★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기

'모두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으로 그런 것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자신이 가진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친구들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올리는 학습 자료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함부로 자료를 공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 1. 저작권 침해의 요건
- (1)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도용을 하여야 하며, 실질적 유사성이란 일견하여 원 저작자의 저작물과 유사한 것을 말하나, 단순히 이미지 등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부족함

(2) 의거성(접근성)

저작권상의 창작성은 상대적 창작성이므로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여도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우연히 동일한 것이라면 침해가 아님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의거성)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는 경우 의거성이 추정됨



- 2. 저작권 침해의 구제
- (1) 분쟁조정 신청
 - 1)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2) 법원에 침해금지청구 등을 하는 경우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수 있어 자주 이용되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소정의 사용료 지급 등을 조건으로 분쟁을 해결할수 있음
- (2) 침해금지청구권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3) 손해배상청구권

타인의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음

(4) 명예회복 청구권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5) 침해죄

- 1) 저작재산권 침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저작인격권 침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Thank You for Listening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